

## 시설개선현황 기록부

(액화석유가스 판매·영업소)

(앞쪽)

		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		
		작성자 (서명 또는 인)				
		전화번호				
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			
소재지	시 구 동 도 시·군 면 리	해당 연월	분기( . . . ~ . . . )			
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		단독주택	공동주택	업무용		
유통용기 소유현황 (단위: 개)	구 분	13kg 용기	20kg 용기	50kg 용기	그 밖의 용기	
	판매업소 소유수량					
	소비자 소유수량					
	그 밖의 소유수량					
보험가입비		원				
가스보일러 설치현황 (단위: 대) ※ 이미 설치된 보일러 포함		단독주택	공동주택	업무용		
퓨즈콕 설치현황 (단위: 가구 수 또는 업소 수) ※ 이미 설치된 퓨즈콕 포함		단독주택	공동주택	업무용		
공급설비 소유현황 (단위: 가구 수 또는 업소 수)		단독주택	공동주택	업무용		
종업원 수 (단위: 명)	전체 직원 수	배달원	안전관리자	안전관리원	그 밖의 인원	
대상코드		14 단독주택	15 공동주택	16 업무용		
구분	코드	전 분기 개선	해당 분기 점검	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	해당 분기 시설개선	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
총괄	14					
	15					
	16					
	계					
구분	코드	시설점검	시설개선	수리(A/S)	신설	
개선명세	14					
	15					
	16					
	계					
구분	코드	부분개선	전면개선	신설		
개선대상	14					
	15					
	16					
	계					

### 작성방법

뒤쪽의 기재 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기재 요령

1. 대표자: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2. 작성자: 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.
3. 전화번호: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.
  
4. 상호: 허가증에 기재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상호명 적습니다.
5. 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
6. 소재지: 허가증에 적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 적습니다.
7. 해당분기: 4분기로 구분하여 해당 분기의 시작-연월일과 종료-연월일의 날짜를 적습니다.  
예) 1사분기: 2005. 01. 01 ~ 2005. 03. 31
8. 액화석유가스 공급가구 수 및 업소 수: 해당 분기 말 현재 공급된 가구(업소)수를 말합니다.  
· 단독주택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.  
· 공동주택: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.  
· 업무용: 해당분기의 주택 외의 공급업소 수를 적습니다.
9. 유통용기소유현황: 해당 분기말 현재 유통용기소유현황을 13kg 용기, 20kg 용기, 50kg 용기, 그 밖의 용기로 구분하여 적고, 소유구분에 따라 판매업소 소유수량, 소비자 소유수량, 그 밖의 소유수량 구분하여 적습니다.  
· 판매업소 소유수량: 판매업소 소유용기(소비자에게 임대해 준 용기 수량 포함)의 수량을 적습니다.  
· 소비자 소유수량: 소비자 소유용기 수량을 적습니다.  
· 그 밖의 소유수량: 판매업소 및 소비자 소유용기 이외의 용기수량을 기재합니다(충전소 소유용기 포함합니다).  
※ 그 밖의 용기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3kg, 5kg, 5.5kg, 7kg, 10kg, 30kg, 200kg, 그 밖의 용기의 소유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.
10. 보험가입비: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(소비자보장책임보험)을 가입한 분기에 총납입금액을 기재하고, 그 외 분기에는 적지 않습니다.  
※ 영업배상책임보험,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료는 제외합니다.
11. 가스보일러설치현황: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(업소) 중 해당 분기 말 현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구(업소)를 주택, 공동주택,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12. 퓨즈콕 설치현황: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구(업소) 중 해당 분기말 현재 퓨즈콕이 설치된 가구(업소)를 주택, 공동주택,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13. 공급설비소유현황: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에서 소유한 공급설비를 주택, 공동주택,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14. 전체 직원 수: 해당 분기 말 현재 판매업소 또는 영업소에서 고용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. 다만,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전체직원수와 배달원, 안전관리자, 안전점검원, 그 밖의 인원의 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.  
· 배달원: 액화석유가스 배달 소요인원을 적습니다.  
· 안전관리자: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 모두 적습니다.  
※ 다만, 대표자 등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경우 안전관리자 인원에 포함합니다.  
· 안전점검원: 액화석유가스배달원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인원을 적습니다.  
※ 다만, 안전점검원이 배달원을 겸직할 경우 안전점검원 인원에 포함하고 배달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  
· 그 밖의 인원: 배달원, 안전관리자, 안전점검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공자, 사무 종사자 등의 인원을 적습니다.
15. 시설개선 세부명세
  - < 총 괄 >
    - 전 분기 누락분은 당해 분기에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.
    -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    - 1) 전 분기 개선: 전 분기에 시설개선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    - 2) 해당분기 점검: 해당 분기에 점검을 실시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  
※ 점검대상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검실시 대상이며,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은 제외합니다.
      - 3) 해당 분기 점검 결과 개선대상: 해당 분기에 시설점검을 실시한 가구(업소) 중 개선이 필요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  
※ 개선대상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비설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가구(업소)입니다.
      - 4) 해당 분기 시설개선: 시설개선, 수리,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.
      - 5) 전체공급 수 중 미개선 수: 부분개선, 전면개선, 신설의 합계를 적습니다.
  - < 개선명세 >
    - 1) 시설점검: 해당 분기에 시설을 개선한 시설 중 점검을 실시한 가구(업소)수를 적습니다.
    - 2) 시설개선: 해당 분기에 시설개선을 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  - 3) 수리(A/S): 해당 분기에 가스용품 및 가스시설의 수리(A/S)를 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  - 4) 신설: 해당 분기에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시설로서 부적합 시설 중에서 시설을 개선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- < 개선대상 >
    - 1) 부분개선: 전체공급 수 중 일부시설에 대해 개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  - 2) 전면개선: 개선대상 시설 중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
    - 3) 신설: 해당 분기에 새로 액화석유가스공급을 실시한 가구(업소) 수 중 새로 개선이 필요한 가구(업소) 수를 적습니다.